

2025년도 「안전일터 조성지원」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자율신청품목 2차) 공고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장의 사고사망 감축을 위한 『안전일터 조성지원(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 중 자율신청품목에 대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29일

고용노동부 장관 ·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 및 기술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 자율신청품목 : 지정품목 외 사업주가 사업장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서 필요한 안전 시설·장비를 신청하는 품목

2. 신청자격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 사업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건설현장 제외, 건설업 본사는 신청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첨부1]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첨부1],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협력업체임이 확인 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

3. 참여제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지급대상자 결정 이후라도 아래 참여 제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결정 취소

<참여 제한 사유>

-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보조금 부당수급 등)에 따른 제한기간 중인 자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주(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1조 별표 21 각 호(제1호 및 제25호 중 사무실 및 건축물 등은 제외한다)에 따른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외)
- ▶ 당해년도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 사업,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안전동행지원사업, 건강일터 조성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
-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올해 2회 이상 결정받은 사업장

4. 지원내용

- (지원한도)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 당 최대 3천만원까지*

* 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80%, 부가세 미지원

* 기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기 지원 보조금을 차감하여 한도 내에서 지급

- ▶ 각각 최대1,000만원 추가 지원 ①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한함), ②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③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지정 사업장, ④고위험업종*(6개업종)

* ①기타각종제조업(22910), ②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21831), ③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22404)
④강선건조또는수리업(22601), ⑤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21801), ⑥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21856)

- (지원품목) 스마트 안전장비 자율신청품목

- ▶ 다음의 조건을 토대로 안전보건공단이 판단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 1) 산업재해 예방 또는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확보를 위한 제품
- 2) 인공지능·로봇공학·정보통신·사물인터넷·센서기술 중 1개 이상이 적용된 제품
- 3) 상기 기술·스마트·신기술·혁신 관련 국가 및 정부기관의 인증·특허가 있는 제품
예) 혁신제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신기술(NET 등)인증, 국내 특허증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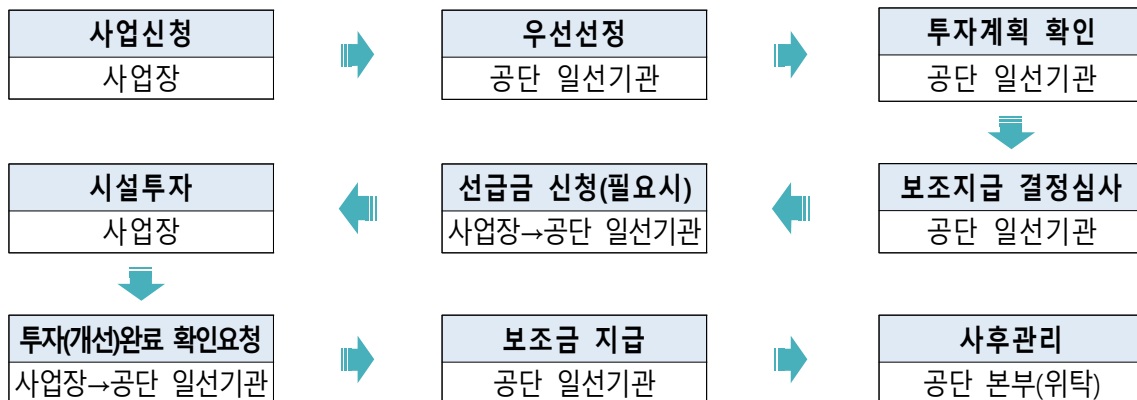
<(참고) “자율신청품목”으로 지원불가 제품>

- 수요 과다 등으로 관리품목으로 지정된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
- 아래 사유 등으로 인해 안전보건공단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으로 보조지원이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지원 불가
 - 1) 제출 서류 및 신청 사업장 현장확인 결과 지원 타당성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2) 산업재해예방 목적보다 공정개선에 주목적이 있는 생산설비로 판단되는 경우
 - 3) 위험제거·대체 등의 상황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
 - 4) 기존 제품을 단순 조합하여 구성한 경우
 - 5) 상용화되지 않거나 개발 중인 제품인 경우
 - 6) 지정품목에 해당하지만 지정품목 기준을 충족지 못하는 경우
 - 7) 국가 및 정부기관이 발행한 인증 또는 특허가 아닌 경우
 - 8) 법적 의무 인증 대상에 해당됨에도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 9) 단순부품, 소프트웨어(어플, 프로그램) 단독, 임차 제품, 소모품, 스마트폰 등
 - 10) 그 외 보조금 지급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 등

- 지급 및 최소성능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2] 참조

○ **(지원절차)** 일선기관별 배정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신청·접수

※ 필요 시, 일선기관별 보조금 지급대상자 우선지원 선정기준 적용(첨부3 참조)



5. 신청기간 및 방법

○ **(지원예산)**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예산의 10% 내외로 운영

○ **(신청기간)** '25. 4. 29.(화) 15:00 ~ 5. 23.(금) 15:00

○ **(신청방법)** 온라인을 통한 신청·접수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오프라인 신청불가)

☞ 온라인 신청 매뉴얼: clean.kosha.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사업주 본인 이외 대리 신청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에서 대리 신청한 것이 확인될 시 서류 일체 반려 조치

○ **(제출서류) 보조지원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

- ※ 온라인 신청 시 「참여사업장 이용 동의」 사항은 모두 체크하고 서명란에 반드시 **사업주명**으로 서명하고, **대표자(담당자)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
- ※ 최소 성능기준에 명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용 등을 위해 이행하여야 할 법적 의무 인증/검사 등의 증명서류는 반드시 제출되어야 함

구 분	비고
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자율신청품목 신청서	(첨부4)
② 스마트 안전장비 자율신청품목 도입 계획서	(첨부4)
③ 신기술 적용 및 스마트·신기술혁신 관련 증빙서류(시험성적서, 인증서, 특허증 사본 등)	
④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⑤ 상품설명서(카탈로그, 설명서) 등 : 제품명, 외관사진, 사양, 규격, 기능, 도면 등 ※ 최소성능기준에서 제시하는 기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⑦ 스마트 안전장비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첨부4)
⑧ 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투자계획용) ※ 제작·판매업체 서명은 견적서의 제작·판매업체와 일치	(첨부4)
⑨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등 -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차량계 건설기계·하역운반 기계 등 해당 시	해당시
⑩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해당시
⑪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 50인 이상인 경우	해당시
⑫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사업장 협력업체 확인 서류 ※ 50인 이상,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협력업체인 경우	해당시
⑬ 추가지원 증빙자료(강소기업, 근로자수, 위험성평가 인정, 특별재난지역 등)	해당시
⑭ 법적 의무 인증/검사 등의 증명서류 사본	해당시

※ ⑥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발급」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사업주가 산재보상보험을 임의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생략

☞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 ⑩은 **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5건 이상)**를 말하며, 제출 대상 여부는 [첨부 2] 보조금 지급기준 참조

6. 보조금 지급조건

-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투자완료 기간 내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설치 등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완료하고, 제출서류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가능

- (투자완료기간) 보조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투자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하며 사업주의 귀책이 없는 경우 추가연장 가능

- (확인요청)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설치 등 완료 후, 다음의 서류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여, 공단의 확인을 요청

※ 보조지원 장비에 대하여 공단의 원활한 투자완료 확인을 위해, 이동이 가능한 보조지원 장비는 공단에서 요청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함

구 분		비고
① 입금 신청통장 사본 각 1부		
②-1 실거래 입증서류: 거래내역 증빙		
오프라인 구매 시 (제품 구매) 계약서 사본 1부	온라인 구매 시 구매내역(온라인 쇼핑몰 구매페이지 등) * 포함내용: 모델명,수량,금액,결제방법	
②-2 실거래 입증서류 : 입금증빙서류		
③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검토)보고서		해당시
④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⑤ 지급보증보험증권		(첨부5)
⑥ 하자보증보험증권 사본(구매(제작·판매)업체별 소요금액 100만원 이상시 제출)		해당시(첨부6)
⑦ 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투자완료용) ※ 제작·판매업체 서명은 견적서의 제작·판매업체와 일치하여야 함		(첨부4)
⑧ 품목별 안전인증, 안전검사 등 인증·검사 관련 서류 ※ 크레인 주요구조부 변경에 따라 안전인증 시 소요비용 증빙 서류 제출		해당시
⑨ AI 카메라 설치 서약서		해당시(첨부4)
⑩ 보조금지급 예정사업장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첨부4)
⑪ 품목별「스마트 안전장비 시설개선 완료 증빙사진」		(첨부4)

※ ④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발급」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사업주가 산재보상보험을 임의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생략

☞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 ⑥「하자보증보험증권」은 제작·판매업체가 보조금 지급사업장에 제공하고, 보조금 지급사업장은 공단에 사본을 제출

<입금 증빙서류>

(오프라인 구매시)

- ① (무통장입금) **이체확인증* + 전자세금계산서 + 사업장 및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통장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지급금액 등 포함

(온라인 구매시) ①번 또는 ②번 서류 제출

- ① (무통장입금) **이체확인증 + 판매업체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사업장용 현금영수증(국세청 홈택스))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지급금액 등 포함

- ② (카드결제) **신용카드매출전표 + 신용카드복사본***

· (사용가능카드) 법인카드(법인) 또는 국세청 등록된 사업용신용카드(개인사업자)

· (신용카드복사본) 법인명 또는 대표자명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카드번호는 일부 숨김

· (신용카드매출전표) 공급자와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의 정보가 일치하여야 함

7. 선금급 (요청 시)

- 사업주의 초기 비용부담을 감소시키고, 신속한 해당 사업의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선금 지원 운영

-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선금급 신청양식*과 지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한 경우, 보조결정금액의 70% 이내에서 선금급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선금급 신청 여부에 사전체크한 경우는 생략 가능

8.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투자기업은 보조지원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제재부가금(최대 5배) 및 참여배제 조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거짓·부정) 보조금 및 5배 추가 환수, 5년 제한, (임의매각·훼손·분실) 보조금 및 2배 추가 환수, 3년 제한, (목적외사용·국외이전) 보조금 및 2배 추가 환수, 3년 제한

9. 취소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 지급 사업장은 보조금 지급이 취소되고 지원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환수)하여야 함

<지원 취소 사유>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 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 ▶ 지원 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 ▶ 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 ▶ 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10. 기타사항

- 문의처: 대표번호(1544-3088) 또는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 참고
☞ [첨부8] 또는 홈페이지(clean.kosha.or.kr)>알림마당>지역별 문의처 참고
- **(사후관리)** 지원 품목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공단에서 확인
 - 투자완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투자기업을 방문하여 사후기술지도 실시
 - 사후관리기간(3년)동안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 **(품질보증)** 사후관리기간 동안 A/S가 유지토록 지원품목은 품질 보증기간*(3년) 의무가 확보되어야 함

* 1년 무상, 2년 유상(제품의 본질적 문제는 제작·판매업체 부담 조건)

- **(명판부착)** 기본적인 제반정보*를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기재하여 부착

* 필수정보: 제품명(모델명포함), 일련번호, 제조년월, 제작업체명, 판매업체명(연락처)

※ 스티커, 종이 및 그 밖에 쉽게 파손·변형·지워지는 재질(방법)로의 부착은 불가하며,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부착

- **(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기계*에 스마트 안전장비를 부착·설치하는 경우 관련 위험 기계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 **(지원제외)** 안전동행 지원사업(舊 안전투자 혁신사업) 보조금을 지급받은 설비에 설치하는 스마트 안전장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첨부 1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발급 방법

■ 개요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한 사업주에 한해, 50인 이상 사업장을 지원대상으로 하고자 함
(다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일 경우 중기업도 지원대상)

Q.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은 ①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과 ② 비영리 사회적기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은 업종별 매출액에 따른 규모기준과 5천억 미만의 상한기준을 모두 갖추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등 일정한 독립성기준을 갖춰야 중소기업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는 규모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갖춰야 중소기업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접속하여 발급 신청(오프라인의 경우 홈페이지 참조)
- ☎ 문의
· 일반상담(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온라인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 02-3215-2674

[발급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번호: (0000) - (0000) - (00000)

중소기업 확인서
[중기업 / 소기업 / 소상공인]

기업명: _____

사업자등록번호: _____ 별첨등록번호: _____

대표자명: _____

주소(본점): _____

유효기간: 0000. 00. 00. - 0000. 00. 00.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공공기관 입찰 이외 용도

• 확인서 신청지점
사업자등록번호: _____
주소: _____

본 확인서는 「중소기업확인법」 제20조 또는 「소상공인지원법」 제22조에 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⑤

※ 주의사항 ※

- 「중소기업확인법」 제20조 및 「소상공인지원법」 제22조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한 공제제한 대상기업임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기업에 한하여 표시)
- 발급구분 및 발급주소 등 변동사항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통해 확인 가능
- 유효기간 만료일도 발급일 이후 발행, 유효성 및 유효기간 변동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할 수 없음
- 기타 자료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중소기업확인법」 제20조에 따라 30일안정 이의제기 가능 또는 이의제기신청이 적절치못한 경우 고지할 수 있음

■ 확인사항중

- ① 신청사업장이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에 한하여 지원(중기업의 경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임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 ② 유효기간 : 유효기간 내 신청 사업장인 경우 지원가능
※ 유효기간 산정기준 : 1년(+3개월)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한 날부터 1년
- 다만, 직전(또는 당해) 사업연도에 창업한 기업 등은 유효기간 달리 적용

첨부 2

스마트 안전장비 자율신청품목 지급 및 최소성능기준

- (품목설명) 특정품목이 아니라 사업주가 사업장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서 필요한 안전 시설·장비를 신청하는 품목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최소성능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하며, 아래에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 확인서 및 관련 서류 제출 필요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자율신청 품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 - 산업재해 예방 또는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확보를 위한 제품 - 인공지능·로봇공학·정보통신·사물인터넷·센서기술 중 1개 이상이 적용된 제품 - 상기 기술·스마트·신기술·혁신 관련 국가 및 정부기관의 인증·특허가 있는 제품 예) 혁신제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신기술(NET 등)인증, 국내 특허증 등 -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차량계 건설기계·하역운반 기계 등에 부착하는 경우 관련 기계는 신청사업장 소유일 것 - 산안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기계*에 부착하는 경우 관련 위험기계는 안전검사를 받고 있는 중일 것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참고) "자율신청품목"으로 지원불가 제품 - 수요 과다 등으로 관리품목으로 지정된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 - 아래 사유 등으로 인해 안전보건공단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으로 보조지원이 적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지원 불가 1) 제출 서류 및 신청 사업장 현장확인 결과 지원 타당성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산업재해예방 목적보다 공정개선에 주목적이 있는 생산설비로 판단되는 경우 예) 용접기, 굴착기, 지게차 등 3) 위험제거·대체 등의 상황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 4) 기존 제품을 단순 조합하여 구성한 경우 5) 상용화되지 않거나 개발 중인 제품인 경우 6) 지정품목에 해당하지만 지정품목 기준을 충족지 못하는 경우 7) 국가 및 정부기관이 발행한 인증 또는 특허가 아닌 경우 8) 법적 의무 인증 대상에 해당됨에도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9) 단순부품, 소프트웨어(어플, 프로그램) 단독, 임차 제품, 소모품, 스마트폰 등 10) 그 외 보조금 지급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 등

품목명	최소성능기준
자율신청 품목	○ 대상제품이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성능이 있다면 해당하는 성능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1. 제품 설치 또는 사용 장소가 비, 분진 등이 노출되는 곳으로 이로 인한 제품의 고장·성능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 IP55이상 만족 또는 별도 케이스 설치 등 별도 조치 필요 ※ IP55이상 시험성적서(또는 인증서) 제출 또는 별도 조치 계획 제출 2. 인공지능(AI) 사용 제품 → 인공지능(AI) 기능·활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가 있는 제품 ※ 한국인정기구(KOLAS) 또는 국제인정협력체(ILAC, APLAC)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시험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제출 ※ 단, 지능형 CCTV인 경우 KISA에서 발행한 '지능형 CCTV 인증서' 제출 가능 3.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대상 제품 → KC전파인증을 취득한 제품 4. 산안법에 따른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제품 → KCs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 ※ 단, 설치 시 또는 주요구조부 변경으로 인한 안전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시까지 인증서 제출 5. 힘을 보조하는 제품 → 근력(힘)을 유지 또는 감소 관련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가 있는 제품 ※ 한국인정기구(KOLAS) 또는 국제인정협력체(ILAC, APLAC)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시험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제출 6. 그 외 법적 의무 인증 해당될 경우 → 관련 인증을 받은 제품(인증서 제출)

유의사항

- 신청 → 우선선정 → 투자계획확인 이후 일선기관별 보조금 지급 심사위원회에서 투자계획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 심사결과 “적정” 시 지원가능
- 기준가격 산정을 위해 투자계획확인 후 결정 전까지 신청품목과 동일 모델의 실거래 세금계산서(5건 이상)를 제출하거나, 투자완료확인(요청)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검토)보고서 제출 필요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최소성능기준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용 등을 위해 이행하여야 할 법적 의무 인증/검사 등의 증명서류는 반드시 제출되어야 함

첨부 3

'25년 스마트 안전장비 보조지원 우선지원 선정기준

※ 우선선정 기준에 관계없이 최우선선정

- ① '24년도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대상 기업, ②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③ 특별재난지역(산불 등의 피해지역) 내 피해사업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장)

선 정 항 목		항목별 가중치	비고		
■ 공통적용 항목		최대 70점			
①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5점	최근 공식통계 상사근로자수 기준		
② 최초 스마트 안전장비 보조지원 사업장		10점			
③ 사고사망 위험업종		최대 15점	'24년 공식통계 기준 소업종 단위배점		
구분	사고사망만인율				
	10배수 이상	5~10배수 이내	2~5배수 이내	1~2배수 이내	0.5~1배수 이내
배점	15점	12점	9점	6점	3점
④ 최근 3년간('22 ~ '24년) 사고재해 요양승인 사업장		최대 10점	'22~24년 공식통계 기준		
구분	3년	2년	1년		
배점	10점	7점	4점		
⑤ 공단 산재예방 빅데이터 플랫폼 고위험 예측 사업장(위험도 기준)		최대 10점	※ 선정일 기준 전월 위험도 - 공단 빅데이터 활용 고위험 사업장 예측 결과 활용 ※ 위험도를 정도에 따른 점수부여 - 저위험군(0.0~0.2미만) - 중위험군(0.2~0.8미만) - 고위험군(0.8~1.0)		
구분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배점	10점	7점	4점		
⑥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최대 10점	※ 선정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집계한 최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일괄 부여		
구분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비율				
	80% 이상	60% 이상 80% 미만	40% 이상 60% 미만	20% 이상 40% 미만	0% 초과 20% 미만
배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⑦ 고용위기 지역('25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5점			
⑧ 「산단대개조」정책에 따라 선정된 산업단지 입주기업		5점			
■ 자율활동 우수항목		최대 30점			
⑨ KOSHA-MS 인증 사업장 또는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15점	인정 유효기간 내 보조금신청 시 점수 부여		
⑩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 기업 선정 또는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		10점	각 2점씩 단, 우수항목 중복시 최대10점으로 한정 *대상 명단이 없는 경우 인증(정)서 제출 시에만 점수 부여 *인증기간 내에 한하여 가점 부여		
* ①노사문화 우수기업, ②강소기업, ③일학습병행제 인정 사업장, ④NCS 기업활동 우수사례 선정기업, ⑤장애인고용 우수 사업주 기업, ⑥일자리 으뜸기업, ⑦일터혁신 우수기업(인증), ⑧기업 채용지원패키지 참여사업장, ⑨산학협력 우수기업(인증), ⑩여름 휴가분산 우수기업					
⑪ 아래의 사업에 참여사업장		5점	'24,'25년도 사업 참여사업장		
①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참여 업체 ②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참여 사업(1회 이상 컨설팅 받은 사업장) ③위험성평가 컨설팅 참여 후 인정 참여 사업장 - 세가지 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공단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위탁) 사업장에 점수 부여					
■ 가점 항목		(가점) 10점			
⑫ 정부 혁신, 신기술 인증제품		10점	관련 증빙(확인서, 인증서 사본 등 신청 시 제출)		
※ 인정범위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신기술(NET)인증 제품, 환경부 혁신제품,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등					
계		최대 100점			

※ 개별선정 점수가 동일할 경우 항목별 순번(②-③-④-⑤-⑥-⑦-⑧)의 고득점 사업장 순으로 우선선정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자율신청품목 신청서

※ 신청서는 단가(제품) 또는 1식(공사 등) 기준으로 작성

■ 일반현황

사업장명		대 표 자	
소 재 지			

■ 신청품목

품목(제품)명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		
안전보건기준 등 관련 근거		예)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신기술 적용 여부(해당 항목 모두 체크√)				
☐ 인공지능 (AI기술)	☐ 로봇공학 (로봇적용)	☐ 정보통신 (ICT기술)	☐ 사물인터넷 (IoT적용)	☒ 센서기술 (데이터제어)

■ 스마트·신기술·혁신 관련 인증·특허 취득 여부(반드시 1개 이상 체크√)

구 분	해당여부(√)	제출서류
() 혁신제품	☐	인증서 등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	
(중소벤처기업부) 신기술(NET 등)인증 제품	☒	
그 외 국가 및 정부기관 등 인증·특허 제품 ()	☐	

■ 신청(견적)금액 : (2,500)천원

- 붙임 : 1. 스마트 안전장비 자율신청품목 도입 계획서 1부.
2. 신기술 적용 관련 증빙서류(시험성적서, 인증서 등) 1부.
3. 스마트·신기술·혁신 관련 제품 인증서 사본 1부.
4. 견적서 1부.
5. 제품사진 등이 포함된 설명자료(카달로그, 설명서 등) 1부.

2025년 0월 00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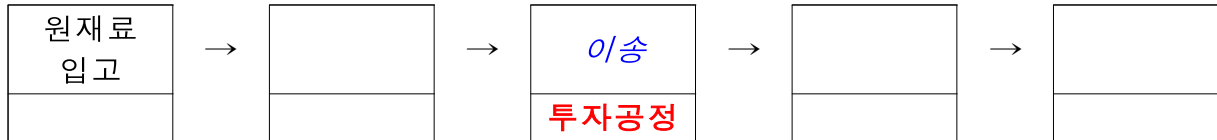
(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귀하

스마트 안전장비 자율신청품목 도입 계획서

1. 사업장 현황

○ 공정흐름도



○ 생산품 또는 작업내용(2줄 내외로 간략히 작성)

- (예) 무인운반차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화장품 박스 적재 장소로 이송

2.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필요성(현실태 및 유해·위험요인 포함)

- (예) 보유하고 있는 무인운반차에 경고장치(경광등, 부저) 및 센서가 미부착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음.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를 도입하여 무인운반차 근처에 근로자가 있는 경우 경고장치로 알려 위험 경고를 알리고, 서행·정지하여 부딪힘을 예방하고자 함

3. 자율신청품목 투자공정 위험성평가 점검표

○ 투자 공정명 : 이송작업

재해유형				현실태 및 위험요인	확인결과		개선방안
끼임	떨어짐	부딪힘	기타		적정	보완	
☐	☐	☒	☐ []	위험지역 접근에 따른 위험	☐	☒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를 도입하여 부딪힘 예방
☐	☐	☐	☐ []	유해위험물의 안전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할 위험	☒	☐	
☐	☐	☐	☐ []	불시기동 등 위험상황이 발생할 위험	☒	☐	
☐	☐	☐	☐ []	시설물 등 이상상태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	☒	☐	
☐	☐	☐	☐ []	인화성 물질 취급공정으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	☒	☐	
☐	☐	☐	☐ []	유해가스 취급 발생 공정으로 인한 질식, 건강장해 등의 위험	☒	☐	
☐	☐	☐	☐ []	근골격계 질환 등의 건강 장해 위험	☒	☐	
☐	☐	☐	☐ []	기타 위험 []	☐	☐	

※ 자율신청품목 투자공정에 대해서만 작성

※ 끼임, 떨어짐, 부딪침 위험 외 기타 재해유형의 경우, 추가 작성

4. 투자대상 공정 또는 교체설비 및 현장전경

투자대상공정	현장 전경
설비 사진1	설비 사진2
설비 사진3	설비 사진4

스마트 안전장비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사업장명	00 가공 산업	평가일시	25. 3. 22.	작성자	김안전
작업공정 (작업내용)	위험요인 및 재해형태	현재안전조치	위험성 결정	개 선 대 책	
재료 입고 인력 또는 운반 기계(지게차)를 이용하여 원자재(철판)을 운반 하는 작업	◦ 지게차운행 중 과적재에 따른 전도 재해 발생 ◦ 지게차운행 중 보행 근로자와 충돌 재해 발생 ◦ 원자재(철판)이 적재불량으로 무너져 근로자 팔림 재해 발생	◦ 작업계획서 작성 ◦ 주변 관리감독자 배치 감독 ◦ 작업계획서 작성 ◦ 주변 관리감독자 배치 감독 ◦ 보행자와 지게차 운반로 구획 구분 ◦ 적재대 및 고정장치설치하여 적재 ◦ 적재 주변을 고려하여 구획 구분	☐적정 ☒보완 ☐적정 ☒보완 ☒적정 ☐보완	◦ 스마트 전도예방장치를 지게차에 장착하여 상시 과적재와 전도여부를 운전자에게 알려 예방하도록 조치 ◦ 스마트 충돌예방장치를 지게차에 장착하여 충돌 위험을 운전자에게 사전에 알려 예방하 ◦ 현상태 유지	
절 단 자동절단기를 사용하여 철판을 절단하는 작업	◦ 자동 절단기 수리·점검 중 급작스러운 작동으로 근로자 절단 사고 발생 ◦ 자동 절단기 주변에 관계자 외 사람이 출입하여 끼임 등 사고 발생	◦ LOTO 실시 ◦ 안전보건표지(출입금지) 부착	☐적정 ☒보완 ☐적정 ☒보완	◦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위험기계기구)를 설치를 통해 근로자를 자동 감지하여 정지하도록 조치 ◦ 인공지능기반(AI) 인체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관계자외 출입 및 기타 재해 등 예방	
용 접 산업용로봇을 사용하여 원자재(철판)을 용접하는 작업	◦ 수리·보수·기타 확인을 위해 산업용로봇 근처로 가는 중 급작스러운 작동으로 충돌 위험이 있음 ◦ 용접시 발생하는 불티로 인해 화재 발생 ◦ 산업용 로봇 충전부 노출 부분에 접촉하여 감전 위험	◦ LOTO 실시 ◦ 안전보건표지 부착 ◦ 충전부에 절연덮개 설치 - 덮개 제거하여 작업시 작업계획서 관리감독자 배치 - 주회 충전부 노출여부 순회점검 ◦ 안전보건표지 부착	☐적정 ☒보완 ☐적정 ☒보완 ☒적정 ☐보완	◦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위험기계기구)를 설치를 통해 근로자를 자동 감지하여 정지하도록 조치 ◦ 인공지능기반(AI) 인체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관계자외 출입 및 기타 재해 등 예방 ◦ 현상태 유지	
적 재 가공된 철판을 창고에 적재하는 작업	◦ 천장크레인으로 가공 철판을 옮기는 도중 근로자와 충돌 및 자재에 팔림 재해 발생 ◦ 지게차운행 중 보행 근로자와 충돌 재해 발생	◦ 작업계획서 작성 ◦ 주변 관리감독자 배치 감독 ◦ 작업계획서 작성 ◦ 보행자와 지게차 운반로 구획 구분	☐적정 ☒보완 ☐적정 ☒보완	◦ 인공지능(AI) 크레인충돌예방장치를 설치하여 충돌사고 예방 ◦ 스마트 충돌예방장치를 지게차에 장착하여 충돌 위험을 운전자에게 사전에 알려 예방하	

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자율품목]

1. 제공·설치 예정인 스마트 안전장비(가) 아래와 같이 기준 이상임을 확인 및 서약합니다.

품목명	신청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 - 산업재해 예방 또는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확보를 위한 제품 - 인공지능·로봇공학·정보통신·사물인터넷·센서기술 중 1개 이상이 적용된 제품 - 상기 기술·스마트·신기술·혁신 관련 국가 및 정부기관의 인증·특허가 있는 제품 예) 혁신제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신기술(NET 등)인증, KCs안전인증(로봇), 국내 특허증 등 -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차량계 건설기계·하역운반기계 등에 부착하는 경우 관련 기계는 신청사업장 소유일 것 - 산업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기계*에 부착하는 경우 관련 위험기계는 안전검사를 받고 있는 중일 것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최소성능기준	
○ 대상제품이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성능이 있다면 해당하는 성능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1. 제품 설치 또는 사용 장소가 비, 분진 등이 노출되는 곳으로 이로 인한 제품의 고장·성능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 IP55이상 만족 또는 별도 케이스 설치 등 별도 조치 필요 ※ IP55이상 시험성적서(또는 인증서) 제출 또는 별도 조치 계획 제출 2. 인공지능(AI) 사용 제품 → 인공지능(AI) 기능·활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가 있는 제품 ※ 한국인정기구(KOLAS) 또는 국제인정협력체(ILAC, APLAC)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시험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제출 ※ 단, 지능형 CCTV인 경우 KISA에서 발행한 '지능형 CCTV 인증서' 제출 가능 3.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대상 제품 → KC전파인증을 취득한 제품 4. 산업법에 따른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제품 → KCs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 ※ 단, 설치 시 또는 주요구조부 변경으로 인한 안전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시까지 인증서 제출 5. 힘을 보조하는 제품 → 근력(힘)을 유지 또는 감소 관련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가 있는 제품 ※ 한국인정기구(KOLAS) 또는 국제인정협력체(ILAC, APLAC)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시험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제출 6. 그 외 법적 의무 인증 해당될 경우 → 관련 인증을 받은 제품(인증서 제출)	

2.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가 제공·설치한 스마트 안전장비(구성포함)의 “설치·제공 장비 성능”이 “보조금 지급기준 및 최소성능기준”에 미달 또는 내용과 다르거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및 지급신청사업장 각각의 귀책에 따라 책임의 의무가 있으며,

3.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158조 및 융자금 지원사업 운영규정(고시), 그 밖에 공단 내규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위 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함.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명 : △△AI 사업주 : 김 안전 (서명)
지급신청사업장명 : 00 종합건설 사업주 : 이 보건 (서명)

인공지능(AI)관련 카메라 설치에 대한 서약서

1. 지급대상사업장은 해당 스마트 안전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아래에 법적 사항을 준수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급대상사업장에 책임이 있음을 확인 및 서약합니다.

◆ (공 통) 근로자 대표*가 해당 스마트 안전장비()의 설치를 동의하였으며, 설치 주변 잘 보이는 장소에 "시설안전(산업안전) 및 화재예방"목적으로 해당 스마트 안전장비()를 설치하였음을 안내하는 표지 등을 부착하여 공지하였음.

* 근로자대표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 (근로자 30인 이상)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구성하고, 제20조 1항 14호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에 따라 해당 스마트 안전장비()의 설치를 협의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였음

위 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함.

지급대상사업장명 :

사업주 : (서명) 근로자대표 : (서명)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 본 확인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지급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작·판매업체로부터 투자대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등의 부정수급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사항 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본 보조금 지급 사업주는 지급요청에 앞서 제작·판매업체로부터 투자금액의 일부를 현금 또는 계좌송금 등의 방법으로 돌려받은 적이 없으며, 보조금 수령 이후에도 부정수급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 (부정수급 개념) 부당한 방법 또는 과실로 보조금을 수급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공공재정환수법, 보조금법에 따른 환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

관 련 법 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자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0 . .

사업장명 :

사업주 성명 :

(서명)

스마트 안전장비 시설개선 완료 증빙사진(투자완료)

사업장명	<u>(주)△△산업</u>	작성일자	20 . . .
------	----------------	------	----------

☐ 설치 및 구매 품목명 : 인공지능기반 인체감지시스템
☐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명 : □□시스템(주)
☐ 완료 증빙사진

<u>사진1</u>	<u>사진2</u>
<u>사진 제목1</u>	<u>사진 제목2</u>
<u>사진3</u>	<u>사진4</u>
<u>사진 제목3</u>	<u>사진 제목4</u>
<u>사진5</u>	<u>사진6</u>
<u>사진 제목5</u>	<u>사진 제목6</u>

※ 필요에 따라 사진(칸) 등을 추가하여 작성

첨부 5

지급보증보험 예시(투자완료 요청일 이전 날짜로부터 4년)

<지급보증보험 증권 설명>

- ▶ 계약기간 :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단,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 + 4년으로 적용
※ (예시)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25.9.30.(지급보증기간 산정: 4년)
보험기간: '25.9.19. ~ '29.9.18.
- ▶ 피보험자 : 안전보건공단(사업자등록번호 122-82-04898), 보험계약자 : 지급대상사업장
- ▶ 발급기관 : SGI서울보증보험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계약이 가능한 보증보험사
※ 문의처: SGI서울보증보험 울산지점(052-274-0021) 또는 관할 지역 지점

< 작성 예시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인터넷 발급용)			
증권번호	계 호		
기본사항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122-82-04898 안전보건공단
보험가입금액	₩	보험료	월 일시납 ☐ 분납 ☐
보험기간	2025년 9월 19일부터 2029년 9월 18일까지		
보증하는 사항			
보증내용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 반환지급보증		
특별약관	1. 보험금지급특별약관 2. 신용카드어음보험료납입특별약관 본 증권에 첨부되어 있는 보통약관 및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기사항			
주계약내용	[주계약내용] 주계약명 계약기간 계약체결일자 계약금액 공헌사업장 보조금 지원사업 2025년 9월 19일부터 2029년 9월 18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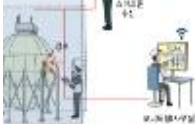
<하자보증보험 증권 설명>

- ▶ 계약기간 :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단,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 + 3년 2개월로 적용
- ※ 예시) ① 투자완료확인 요청일이 '25.6.30.이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이 '25.6.16. 경우
'25.6.16. + 3년 2개월 => '25.6.16. ~ '28.8.15.
- ②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 이전 날짜로도 발행 가능
'25.6.2. 발행 시 '25.6.2. + 3년 2개월 가산하여 => '25.6.2. ~ '28.8.1.
- ▶ 피보험자 : 지급대상사업장, 보험계약자 :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 ※ 주계약금액 보증금율 : 계약금액(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30% 이상
- ▶ 필요서류 : 지급대상사업장과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간 계약 당시 계약서 (견적서 및 결정통보서 같음가능)
- ▶ 발급기관: SGI서울보증보험 또는 하자보증보험증권 계약이 가능한 보증보험사
- ※ 하자보증보험 계약은 건설공사 및 납품계약 등을 모두 가능하여야 함
- ※ 문의처: SGI서울보증보험 울산지점(052-274-0021) 또는 관할 지역 지점

<작성 예시 >

하자보증보험증권 (인터넷 발급용)			
증권번호	계 호		
기본사항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 일시납 ☐ 분납
보험기간	2025년 6월 16일부터 2028년 8월 15일까지		
보증하는 사항			
보증내용	하자보증금		
특별약관	1. 보험금지급특별약관 2. 신용카드어음보험료납입특별약관 본 증권에 첨부되어 있는 보통약관 및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기사항			
주계약내용	[주계약내용] 주계약명 담보기간 계약세금일자 계약금액 보증금율 30%		

연번	품목명		설 명	관련 그림	
[안전]					
1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 시스템	고정식	인공지능(AI)모델 기반으로 카메라 또는 센서(Lidar 등)을 통해 위험영역행동, 사고발생 등을 인지하여 경보 또는 조치를 수행하는 시스템		
2		이동식	인공지능(AI)기반 모델 및 이동통신기술이 적용된 카메라를 통해 근로자가 상시 이동하는 작업(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행동-상황 등을 인지하여 모니터링 및 경보를 해주는 장비		
3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 시스템	ILO형	고위험 기계설비에 센서와 제어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접근 및 행동에 따라 설비의 전원차단 및 정지하는 시스템		
4		인공지능형	고위험 기계설비에 센서 및 인공지능(AI)와 제어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접근 및 행동에 따라 설비의 전원차단 및 정지하는 시스템		
5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		이동형 설비에 센서와 제어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 등 충돌 위험 시 서행-정지하는 시스템		
6	고소작업대 스마트 안전장치 (비접촉 과상승방지장치)		고소작업대와 천장 사이에 거리(높이)를 센서로 측정하여 위험 높이인 경우, 자동정지하는 장치		
7	인공지능(AI) 스마트 크레인 충돌 방지장치	기본	크레인에 인공지능(AI) 기반 모델과 카메라를 설치하여 근로자가 위험구역에 근접하는 경우, 차례로 경보 및 정지하는 시스템		
8		흔들림 방지장치 (옵션)	크레인이 물건을 인양·이동 시 발생하는 흔들림을 제거하여 물건의 떨어짐 사고를 예방		
9	차량계 건설 및 하역운반 기계 스마트 안전장치	무선, ICT, 센서 등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 안전장치로서 다음을 말함			
		전도방지장치 (일반센서형)	하역운반기계가 중량물 운반 시 무게와 중심을 감지하여 전도 등을 예방하는 장치		
10		충돌방지장치 (카메라센서형)	카메라·센서를 통해 하역운반차량이 주변 근로자와 충돌 위험을 경보장치로 알려 예방하는 장치		
11		자동 서행 및 정지	무선장치 및 태그(tag) 등을 통해 전동지게차 및 근로자가 접근하여 충돌위험이 있을 경우, 거리별로 서행 및 정지하는 장치		
12		부착형 충돌방지장치	중장비에 자석 등으로 모니터, 카메라, 경보기 등을 누구나 쉽게 부착하여 사람을 인식하고 접근 시 경보발생		

연번	품목명		설 명	관련 그림
13	스마트 통합 전도 방지시스템	이동식 크레인	각 설비에 센서 및 전도방지장치 등을 설치하여 전도를 예방하고, 무선통신(ICT)을 통해 전도의 상태 및 위험 등을 스마트폰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1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15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16	화학사고예방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고정식	인화성가스액체를 취급하는 장소에 감지기 수신반 등을 설치하여 가스누출상황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모니터링·경보 할 수 있는 시스템(무선통신 활용)	
17		이동식	인화성가스액체를 취급하는 장소에 이동식 감지기 수신반 등을 휴대 및 상시 비치하여 가스누출상황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모니터링·경보 할 수 있는 시스템 (무선통신 활용)	
18		AI(인공지능) 화재감지기	인공지능(AI), IoT 또는 그 밖의 신기술을 활용하여 불꽃 등을 극초기에 인지·반응하여 화재·폭발·재해를 예방하는 장비	
19		AI(인공지능) 계측 장치	AI카메라를 통해 아날로그(바늘, 막대, 숫자형 등) 계측기의 측정값을 변환하여 서버 및 관리자에게 전송하는 장치	
20		화학물질 누출 방지형	검출대상물질(유해화학물질 등)과 일반 액체(빗물 등)를 선택적으로 감별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누액감지 센서 및 모니터링 시스템	
21		방폭 정전기 측정기(옵션)	인화성가스액체를 취급하는 장소에 방폭안전인증을 받은 정전기 측정기를 통하여 안전하게 점검하고, 이를 무선통신으로 스마트 폰 등과 연결하여 작업관리자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비	
22		스마트 피난유도설비	정보통신, 센서기술 등을 활용하여 화재 발생 시 비상구가 있는 위치로 작업자의 피난을 유도하는 장치	
23	이륜차 운전자 착용형 충돌보호 에어백조끼		이륜차 운전자가 충돌 등으로 자리에서 이탈하는 경우, 조끼와 이륜차에 연결된 고리가 풀리면서 에어백이 작동하여 운전자를 보호	
24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전기안전장치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하여 전력사용에 대한 정보수집 및 모니터링을 통해 전력 이상* 발생 시 알림 및 조치하여 전기 관련 재해를 예방하는 장치 * 전력 이상 : 과부하, 누전, 이상주파수, 과전압, 전원깨짐, 온도상승(화재) 등	
25		아크제거장치	센서 등을 통해 수배전반에 발생하는 전기아크를 감지하여 순간적으로 제거하는 스마트 안전장치	
26		이동식 누설 전류통제장치	신기술을 활용하여 누설전류를 감지 및 통제하고 동시에 경보 알림을 통해 누설전류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는 장치	
27	음성인식 비상정지 보조 시스템		기계설비 비상정지장치에 음성인식장치를 연결하여 근로자의 비명 및 음성에 따라 기계설비가 정지하고 경보하는 시스템	

연번	품목명		설 명	관련 그림
28	붕괴·변위 위험 경보시스템		정보통신, 센서기술 등을 활용하여 가시설의 변위 및 가속도 변화를 감지하여 붕괴 등 위험요인 발생 시 주변 근로자 및 관리자에게 경보하는 시스템	
29	개구부 덮개 개폐 감지시스템		정보통신, 센서기술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개구부 접근 또는 개구부 덮개 개방 여부를 감지하여 자체 경보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으로 위험 경보 알람을 주는 시스템	
30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 ※ 관리품목		무선통신(IoT), 센서 등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인체감지 충돌 예방장치가 설치된 전동지게차로서 충돌 위험 시 경보장치로 위험을 알리고, 무선통신으로 관리자 등에게 알려 조치할 수 있는 장비	
[보건]				
31	근력보조슈트		고정자세, 중량물 취급 등 신체 부담이 되는 작업을 인공근육, 센서 및 동력을 통해 근골격계질환 발생을 줄여주는 슈트	
32	유해물질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	환기설비 통합 시스템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ICT) 또는 그 밖의 신기술을 통해 유해물질의 사용량, 정보, 노출량 등 사용정보와 환기장치의 모니터링·통제 등 통합관리가 가능한 시스템	
33		화학물질 노출정보 모니터링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된 감지기로 화학물질 노출수준 통합 관리 프로그램이 적용된 스마트폰(또는 웨어러블기기) 및 컴퓨터 등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상황을 경보하는 시스템	
34	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 보조장치		사람이 취급하기에 무겁고 다양한 중량물을 센서를 통해 일정한 힘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 장치	
35	스마트 안전보건	스마트 귀마개	전파 및 그 밖에 스마트 기술 등을 통해 소음을 제거하는 귀마개	
36	개인 보호구	방진 마스크	착용자의 호흡과 연동된 센서를 통하여 공급 유량을 자동으로 조절 가능한 전동식 방진마스크	
37	스마트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장비		무선통신(IoT) 또는 그 밖의 신기술을 통해 공간 제약 없이 실시간으로 밀폐공간 작업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질식·중독 재해를 예방하는 장비	

일선기관명	관할지역	연락처
서울광역본부	서울특별시(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02-6711-2966
강원지역본부	강원도(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횡성군), 경기도(가평군)	033-815-1023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02-6924-8739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02-2086-8017
강원동부지사	강원도(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양양군, 고성군,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033-820-2573
부산광역본부	부산광역시	051-520-0608
울산지역본부	울산광역시	052-226-0527
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창원시,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하동군, 남해군, 통영시, 고성군, 거제시)	055-269-0547
경남동부지사	경상남도(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055-371-7550
광주광역본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062-949-8769
전북지역본부	전라북도(전주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063-240-8542
전남지역본부	전라남도(목포시, 신안군, 영암군, 무안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장흥군)	061-288-8744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064-797-7516
전북서부지사	전라북도(익산시,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063-460-3626
전남동부지사	전라남도(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061-689-4956
대구광역본부	대구광역시(북구, 중구, 동구, 수성구) 경상북도(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군위군)	053-609-0555
대구서부지사	대구광역시(남구, 달서구, 서구, 달성군,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053-650-6822
경북지역본부	경상북도(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구미국가 산업단지, 영주시, 봉화군, 상주시, 문경시, 안동시, 의성군, 예천군, 영양군, 청송군)	054-478-8023
경북동부지사	경상북도(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054-271-2043
인천광역본부	인천광역시	032-510-0526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031-259-7176
경기북부지사	경기도(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도(철원군)	031-828-1943
고양파주지사	경기도(고양시, 파주시)	031-540-3844
경기중부지사	경기도(부천시, 김포시)	032-680-6535
경기서부지사	경기도(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시흥시)	031-481-7520
경기동부지사	경기도(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031-785-3323
경기남부지사	경기도(평택시, 안성시, 오산시)	031-690-1932
대전세종광역본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보령시, 금산군, 홍성군, 서천군, 부여군, 청양군)	042-620-5653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보은군, 증평군, 옥천군, 영동군)	043-230-7127
충북북부지사	충청북도(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043-849-1044
충남지역본부	충청남도(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예산군, 태안군)	041-570-3436